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전재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387

발의연월일: 2024. 7. 30.

발 의 자:전재수·이재관·박선원

허 영 · 이용선 · 복기왕

전진숙 • 이학영 • 강득구

송재봉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하여 폭염·혹한과 같은 기상재난이 증가하고 냉·난방 수요 역시 급증할 수밖에 없으므로 전기요금부담이 높아질 서민들을 위하여 전기요금 감면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폭염·혹한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기요금을 감면할수 있도록 하여 폭염 및 혹한기의 냉·난방기 사용에 따른 국민들의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(안 제17조의3 신설).

법률 제 호
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의3(전기요금의 감면) 전기판매사업자는 폭염·혹한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17조의3(전기요금의 감면) 전기
	판매사업자는 폭염・혹한 등의
	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
	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
	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.